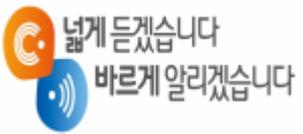


 <b>국토교통부</b>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<b>보도자료</b>		
	<b>배포일시</b>	<b>2014. 8. 12(화)</b> <b>총 4매(본문 2, 붙임 2)</b>	
<b>담당부서</b>	건축정책과	<b>담당자</b>	과장 김상문, 사무관 최찬, 주무관 양동춘 ☎ (044) 201-4082, 4750
<b>보도일시</b>		<b>2014년 8월 1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 <b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12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</b>	

## 다세대,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

- 국토부 「층간소음 가이드라인」 마련 -

- ①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**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질러** 세입자 등 **2명을 사망**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(\*'13. 5.14)
  - ② 양천구 소재 **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** 문제로 다투다 사제 **화염발사기**와 **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**를 윗층으로 들고 **불을 지르고, 일가족 6명**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 (\*'13. 8.30)

- 앞으로 다세대,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.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.
-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던 이웃간 살인,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였던 소규모 주택이었다.
- 국토교통부 (장관 서승환)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,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「**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**」을 마련하여 8월 13일 시달하였다고 밝혔다.
-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, 소규모 주택에 대한 **층간소음 의무화**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**금년 11.29일부터 시행**되므로 **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**된다.
- 이번 「**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**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,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**과 기준을 구분하였다.
  - ① **‘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 · 오피스텔 · 도시형 생활주택’**(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)은
    - 중량충격음 : 50dB, 경량충격음 : 58dB\*을 만족하여야 한다.
    - \* 중량충격음 :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

는 바닥충격음,  
 \* 경량충격음 :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

② 30세대 미만 아파트.주거복합.오피스텔.연립주택.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(중량충격음 : 50dB, 경량충격음 : 58dB)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(붙임 참조)로 할 수 있다.

③ ‘다가구주택·다세대주택·고시원·기숙사’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,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,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.

○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감리보고서 작성·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,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.

□ 이번에 마련된 「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」은 금년 8.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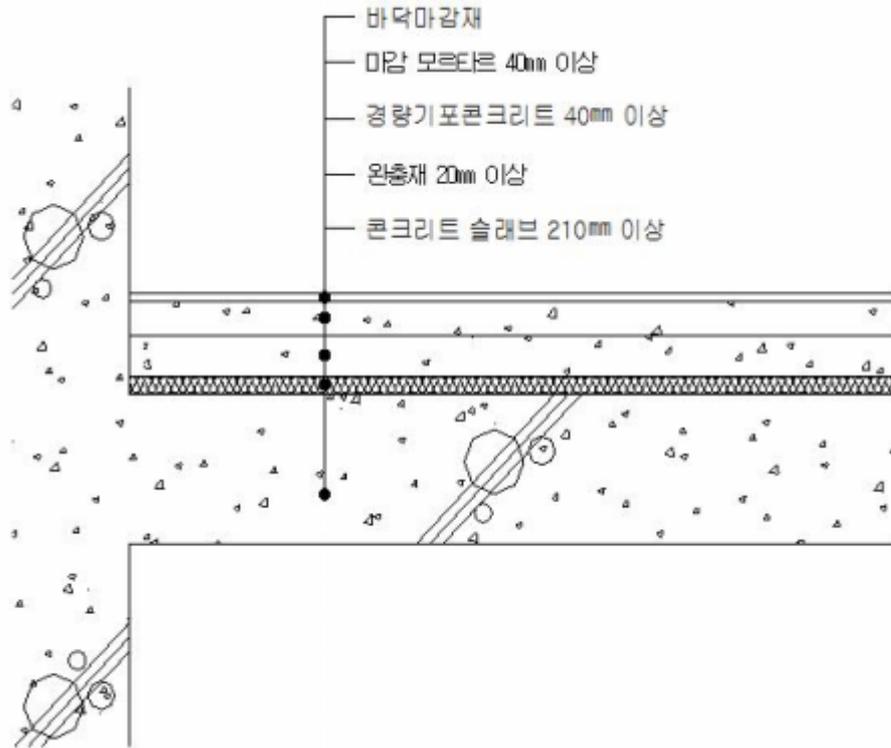
 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찬 사무관(☎ 044-201-40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

**참고1 「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」 대상별 적용기준 비교표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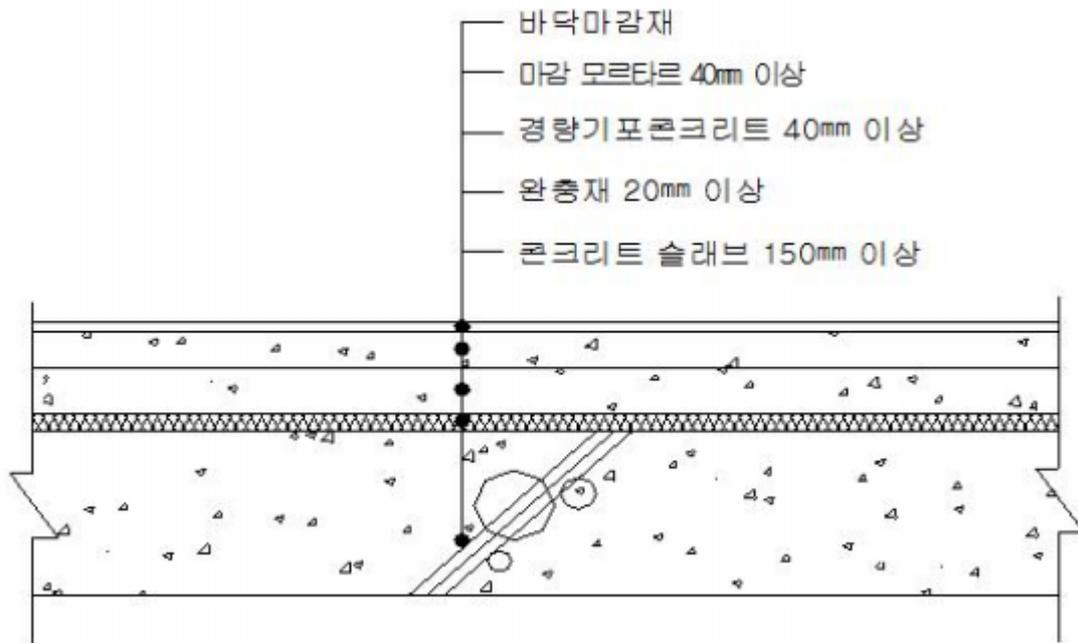
구분	30세대 이상인 주거복합.오피스 텔.도시형 생활주 택	30세대 미만인 아파트.주거복 합.오피스텔.연 립주택.도시형생 활주택	다세대주택, 다 가구주택, 고시 원, 기숙사	주택법 적용 대상 공동 주택
슬래브 최소두께	-벽식 : 210mm -라멘 : 150mm		-벽식 : 210mm -라멘 : 150mm	-벽식 : 210mm -라멘 : 150mm
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 준	주택법준용(dB) (중량:50,경 량:58)	주택법준용(dB) (중량:50,경 량:58)	-	주택법 기준
표준바닥구조	-	적용	-	-
완충재 적용	적용	적용	적용	적용

완충재 성능평가기준	주택법 준용	주택법 준용	주택법 준용	주택법 기준
성능등급기준 (4등급)	-	-	-	적용

**참고2** 표준바닥구조 도해



벽식 구조



라멘 구조

